



## 아르헨티나

# IMF, 차관상환 1년간 유예

지난 7월 15일 IMF는 아르헨티나에 대해 7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10억 달러 규모(SDR 7억 4,000만 달러)의 차관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하였다. 호르스트 쾰러 IMF 총재는 이번 차관상환 유예 결정이 2002년 2/4분기 재정수지 개선과 법·제도 부문에서의 만족할 만한 개혁 성과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는 한편, 향후 동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 사항으로 효과적인 통화정책 마련, 부실은행 정리,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 상환 유예에 어렵게 합의

지난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계속된 IMF 실무단과의 협상은 초반부터 난항을 거듭하였다. IMF는

예금동결조치의 조기 해제 반대, 지방채 발행 중단,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 남용 중지 등을 추가 금융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였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23%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강력한 긴축통화·재정정책은 사회불안을 가중시켜 현 정부의 정책 수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박하였다.

결국, 아르헨티나 정부가 마땅한 통화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100억 달러의 추가 차관도입 및 상환유예 조치에 관한 협상은 무위로 끝나게 되었고,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IMF의 10억 달러 및 IDB의 5억 6,000만 달러<sup>1)</sup>에 대한 디폴트 가능성이 거론되었다.<sup>2)</sup> 이에 다급해진 아르헨티나 정부는 라바냐 경제장관을 워싱턴에 급파하여 협상을 재개하였고, 아르헨티나 정

1)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7월 15일 경제부 가용자금을 동원하여 동 자금을 상환하였음.

2)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2001년 12월, 이미 민간채권단에게 950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상환에 대해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하였기 때문에, 현재 유일한 자금지원 통로인 IMF, IDB 등 국제금융기구에까지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현실적으로 외채상환 및 경제운용을 위한 자금조달은 불가능하게 됨.

부족이 일부 정책기조의 변경을 시사함에 따라 10억 달러에 대한 차관상환 연기 및 추가협상을 위한 실무단 파견에 합의하게 되었다.

### IMF, 아르헨티나의 개혁 성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

IMF 실무단 철수 등 협상과정에서의 난항에도 불구하고 상환 연기 결정이 내려진 근본적인 이유는, 파산법 개정, 경제혼란조성처벌법 폐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축협약 체결 등 IMF가 협상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3가지 요구사항들을 아르헨티나 정부가 충실히 이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 ● 파산법 개정

1995년 개정된 파산법은 파산선고 연기, 채권자의 파산회사 인수, 자산 강제집행 등의 규정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익을 저전혀 고려하 버오르 퍼가디어 왔다. 그러나 지난 12월 디폴트 선언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파산기업이 늘어나자, 두달 데 정부는 파산선고 유예기간을 180일로 파다하게 연장하고 채권자의 파산회사 인수를 전면 금지하는 등 파산법을 지나치게 채무자 위주로 개정하였다. 이에 대해 IMF는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파산법의

개정을 신규 구제금융 지원조건의 하나로 요구하게 되었다. 결국, 지난 5월 14일 법원 감정가에 의한 채권자의 파산회사 인수<sup>3)</sup>, 180일에서 90일로 자산 강제집행 유예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新파산법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IMF와의 협상 재개에 중대하 지지이 이루지게 되었다<sup>4)</sup>

#### ● 경제혼란조성처벌법 폐지

1974년 군사정권 시절 게릴라 자금의 차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경제혼란조성처벌법<sup>5)</sup>은 경제위기 이후 외화유출 목인 혐의를 적용하여 국내·외 은행 임직원들을 형사 처벌하는 데 악용되면서 IMF의 폐지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동 법의 폐지안은 지난 5월 30일 상원의장이 캐스팅 보트까지 행사하는 접전 끝에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하게 되었으며, 이 역시 IMF 차관 상환 유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긴축협약

지방정부의 극심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IMF가 요구한 '연방정부와 주정부들간의 재정긴축 협약'은 2002년 재정적자 60% 감축, 2003년 균형재정 달성, 지방채와 같은 준화폐(parallel currencies) 사용 중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3) 新파산법의 통과로 채권자의 파산회사 인수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동 법은 법원만이 감정인을 정하고, 채권자는 법원이 산정한 감정가를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IMF와 외국 언론들은 법원의 감정인 및 감정가 결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4) 新파산법이 상원을 통과하자, IMF는 즉시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상환을 연기하는 등 아르헨티나 정부와의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5) 1980년대 들어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몇 차례 폐지가 시도되었으나, 하원의 반대로 현재까지 존속되어 왔음.

모든 주(州)와 협약이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페론당 소속 주지사들이 협약 이행을 선언하였고, 부에노스아이레스시(市)를 비롯하여 9개 주가 동 협약에 서명한 상태여서, IMF와 정부 당국은 향후 협약 체결 과정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효과적인 통화정책의 제시가 추가 금융지원의 관건

아르헨티나 정부는 파산법 개정, 경제혼란조성처벌법 폐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축협약 체결 등 제도 부문의 개혁성과에 힘입어 외국 투자자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은 물론 추가 금융지원 협상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및 IMF가 아르헨티나 경제회복을 위해 전·현직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된 '아르헨티나 재건위원회'<sup>6)</sup>를 구성하는 등 보다 협조적인 자세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추가 지원 협상은 이전에 비해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IMF와 아르헨티나 정부의 추가 금융지원 협상타결 여부는 그동안 양측이 이견을 보여온 긴축정책 실시, 예금동결조치 해제 등 일련의 통화정책에 대해 두알레 저브가 어떠한 처사지으 제시할지나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崔 盛 圭】

6) 아르헨티나 경제재건 자문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인 Andrew Crockett을 비롯하여, John Crow 前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Luis Angel Rojo 前스페인 중앙은행 총재, Hans Tietmeyer 前독일 중앙은행 총재 등 4명으로 구성됨.